

나무병원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법인	명칭			대표자			
	등기번호			설립일			
	소재지			전화번호		자본금	
기술 인력	나무 의사	성명	자격번호		성명	자격번호	
	수목 치료 기술자	성명	자격번호		성명	자격번호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2.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나.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2023년 6월 27일 이전에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였던 자(2022년 6월 28일 이후 폐업한 자만 해당하며, 폐업 1년 전부터 폐업까지의 기간 동안 이 법의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가 폐업 후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기업진단 보고서를 갈음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폐업 연도(폐업 연도의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폐업 직전 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의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폐업 연도의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폐업 연도의 재무제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하거나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는 「산림보호법」 제54조제4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나무병원을 등록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4조의2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리절차

